

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26
------------	-----

제출일자: 2005.

제 출 자: 달 성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신청사 준공에 따라 신설되는 청사 시설물을 연중 개방하여 문화예술, 장연회, 예식 등 군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경영수익 사업을 통한 재정확충 및 효율적인 청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주요내용

○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안 제3조 및 제4조)

-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수익 협약 (임대) 운영
- 영화상영 및 연극공연 등 무료 운영

○ 대관의 범위 (안 제6조)

- 기본시설 : 예식장, 대강당(공연시설) 등 그 부속시설
- 부속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각종 행사에 필요한 부속기기와 냉·난방시설

○ 사용신청 및 허가 (안 제7조)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 대구광역시내 주민 또는 직장·단체의 구성원
-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사용료 (안 제11조) : 별첨

○ 사용료 감면 (안 제12조)

(면제대상)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
- 문화예술진흥 등을 위하여 타기관 또는 단체를 군에서 초청하여 개최 하는 행사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본인의 예식

(감면대상)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행규칙에 규정

○ 변상책임 (안 제16조)

- 시설물, 자료, 비품 등을 훼손·망실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

○ 도서자료 대출 및 복사 (안 제18조)

- 군내 거주하고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

4. 참고사항

○ 제정조례안 : 붙임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 설치) 및 지방재정법 제82조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 입법예고 : 2005. 02. 11 ~ 2005. 03. 2 - 의견제출 없음.

○ 예산수반사항 : 있음

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성군 청사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등을 개방하여 문화예술·강연회·예식 등 군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재정확충 및 효율적인 청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예식장, 대강당, 식당, 도서관, 카페테리아 등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제1호 규정에 의한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관료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제1호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라 함은 행정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허가 함을 말한다.

제2장 운영

제3조(운영 및 관리)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무료 운영) 군수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영화상영 및 연극공연 등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① 군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 받은 시설물 등을 군수의 승인없이 사용·수익목적의 변경, 전대 또는 권리의 양도 등을 할 수 없다.
-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군소속 공무원에게 시설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6조(대관의 범위) 군청사의 시설 및 설비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예식장, 대강당 등과 그 부속시설
2. 부속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각종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난방 시설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2. 대구광역시내 주민 또는 직장·단체의 구성원
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시설물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2이상의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1을 제외하고는 신청 첨수순에 의하여 허가 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민간(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중 군에서 후원하는 행사

④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신청자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허가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2. 제8조의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6.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관련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제10조(사용 및 이용시간) ① 시설물의 사용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사용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오전 : 09:00 ~ 12:00
2. 오후 : 13:00 ~ 17:00
3. 야간 : 18:00 ~ 22:00

제11조(사용료) ① 시설물등의 사용료 및 사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② 사용자가 제10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기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진흥 등을 위하여 타기관 또는 단체를 군에서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
 3.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본인의 예식
 4. 신랑, 신부 또는 혼주 중 1인이 접수일 현재 달성군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이거나 직장소재지가 달성군 관내인 자의 예식
- ②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부속설비 등의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납부·반환)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일시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경우
2. 사용예정일 10일전에 사용허가 등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3. 기타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4장 사용자 준수사항

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기간 중 원상을 변경하는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또는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집합인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⑤ 사용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홍보물 게첨) ①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등의 홍보물을 시설물에 설치할 때에는 별도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게첨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16조(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 또는 설비·장비 등을 훼손, 망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자료·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자료·비품으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한 자료·비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구입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물 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이용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및 정신질환이 있는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군수가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5장 도서자료 등 이용

제18조(도서자료 대출 및 복사) ① 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의 대출 및 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군내에 거주하고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하는 신분증 소지자
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9조(기증자료)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및 자료는 기증도서 및 자료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대구광역시 달성군청이 이전하여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

시설물 사용료 및 사용시간(제11조 제1항 관련)

1. 시설물 사용료

시설명	기준	사용료(원)	운영시간	비고
대강당	오전	50,000	09:00 ~ 12:00	432석 (공연시설)
	오후	70,000	13:00 ~ 17:00	
	야간	90,000	18:00 ~ 22:00	
예식장	1회(2시간)	100,000	10:00 ~ 16:00	220석

2. 부속설비 사용료

설비명		기준	사용료(원)	비고
냉·난방	대강당	1회	80,000	
	예식장		50,000	예식시 면제
피아노		1회	30,000	대강당
빔프로젝터		1회	20,000	대강당
조명		1회	25,000	대강당

- 휴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당해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함(예식은 제외)
- 연습,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 당해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초과시 사용료 가산 : 매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20% 가산함.